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8월 7일

부산광역시 조례 제5967호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구청장의 조사 결과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하는 토지등소유자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 갈등, 정비 사업비 부족 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경우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제2호에 따른”을 “제3항제3호, 법 제21조제1항제5호·제6호에 따라”로 한다.

- ④ 법 제21조제2항제5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추정가액”을 “추정가액(감정평가사가 산출한 물건지별 종전자산 추정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합임원)은”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합임원)은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제3호 중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제5항”을 각각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제7항”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조례 제5788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주민공람을 한 구역의 분양신청자에 대해서는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조례 제5788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8조의2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정비구역의 직권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비사업의 추진력을 제고하고, 추정분담금 등 정보에 대한 산출방법 및 제공시기를 명확히 하여 민원분쟁을 예방코자 하였으며, 상위 법 개정에 근거하여 정비구역 직권해제 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가. 사업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구청장의 조사결과 정비사업 시행을 원하는 토지등소유자가 50퍼센트 미만 시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2항)
- 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화시키고,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동의 비율 요건을 강화함(제7조제3항제2호 및 제7조제4항)
- 다. 시장이 구청장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의견 조사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5항)
- 라. 추정분담금 등 정보에 대한 산출방법 및 제공시기를 명확히 함(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3항)
- 마.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부칙 제8조의2 신설)